

# 貨換信用狀 紛爭解決 規則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ules for Resolving Documentary Credits Disputes

朴 錫 在\*\*

- |                     |
|---------------------|
| I. 序 論              |
| II. 韓國의 仲裁制度 및 뉴욕協約 |
| III. 貨換信用狀 紛爭解決 規則  |
| IV. 結 論             |

## I 序 論

信用狀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決済手段으로 인식되어 지금의 국제 거래는 대부분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용장 방식은 여타 결제 방식보다 信用危險이나 金融上의 不便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많은 紛爭의 발생 때문에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又石大學校 貿易學科 專任講師(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Trade, Woosuk University)

현재 대부분의 분쟁은 주로 法院에 의한 訴訟에 의지하고 있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무역거래는 그 特異性 때문에 소송 이외의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 즉, 신용장 분쟁 해결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표현은 법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및 상업상의 기관(예를 들면 國際商業會議所)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신용장은 다른 通商의 분야와 비교하여 볼 때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용장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개의 국제적 체제 즉, 國際商業會議所의 體制와 國際信用狀仲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의 體制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두 체제의 紛爭解決節次 및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信用狀紛爭解決體制를 探索하는 것을 그 目標로 한다. 이를 위하여 理論的 背景으로서 韓國의 仲裁制度和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UN協約(일명 뉴욕協約)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 II. 韓國의 仲裁制度 및 뉴욕協約

### 1. 韓國의 仲裁制度

우리 나라에 仲裁<sup>1)</sup>制度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13호에 의하여 大陸法系인 일본 민사소송법(제8편 중재수속)이 이용된 때부터이다. 8·15 해방 이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60년 현행의 民事訴訟法 제정 시에 이를 폐지하였다가 그 후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른 交易量의 증대로 인하여 분쟁사건도 증가되어 수출진흥의 견지에서 무

1) 仲裁란 紛爭(또는 去來) 당사자간의 合意(仲裁契約)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法院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自主法廷制度로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대한상사중재원 편, 상사분쟁해결안내, 대한상사중재원, 1998, p.5).

역 클레임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以下の 仲裁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우리 나라에서의 仲裁 특히 상사중재가 紛爭解決制度로서 기능을 시작한 것은 1966년 3월 16일 仲裁法이 법률 제1767호로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國際商事仲裁委員會가 설치되고, 같은 해 10월 13일 상사중재규칙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부터이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그 후 업무증가와 주위의 여건변화로 1970년 3월 27일 사단법인 大韓商事仲裁協會로 독립·창설되어 약 10년간 상사분쟁을 처리하여 왔으며, 상공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하청업자들의 권익보호와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0년 8월 19일 大韓商事仲裁院으로 확대·개편되어 명실공히 상사중재업무를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상설 중재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3)</sup>

우리 나라 仲裁法은 제1조에 仲裁의 定義 및 仲裁法의 適用對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중재는 私人間의 紛爭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私人인 제3자(즉, 仲裁人)에게 부탁하여 拘束力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의 대상이 되는 私法上의 紛爭에는 民事紛爭과 商事紛爭이 있고 모두 중재의 대상이 되며, 동법 제4조 3항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를 상사중재로 한다라고 하여 상사분쟁을, 동법 제7조 3항 및 제18조에 따라 상사분쟁을 처리하는 상설기구로 사단법인 大韓商事仲裁協會<sup>4)</sup>를 두고 있다.<sup>5)</sup>

우리 나라 중재법 제2조 1항은 중재계약의 정의와 중재의 기본이 되는 중재계약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중재의 대상으로는 현존의 분쟁 및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 중재법은 私法上의 法律關係로서 분쟁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및 분쟁사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仲裁契約의 방식에 관하여 중재법 제2조 2항에서는 明示的으로 書面으로 作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키로 하는 書面契約, 즉 중재부탁계약, 주 계약에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키로 하는 중재조항이 삽입된

2) 金大鉉, “우리 나라 仲裁法, UNCITRAL 標準仲裁法 및 主要先進國 仲裁法의 比較”, 貿易商務研究, 第7卷, 韓國貿易商務研究會, 1994, p.849.

3) 李淳雨, 상사중재절차 해설, 法經社, 1994, p.12~13.

4) 1980년 8월 29일 사단법인 大韓商事仲裁院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金大鉉, 前揭論文, p.850-851.

경우 또는 당사자간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삽입된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sup>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外國仲裁判定이 어떻게 承認되고 執行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後述하는 우리 나라도 가입한 바 있는 뉴욕협약의 체결국 내에서 행해진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이 정한 승인요건과 집행요건을 갖추면 외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법원에서 執行判決을 얻을 수 있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外國仲裁判定은 원칙적으로 승인될 수 있고, 다만 당사자의 抗辯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대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뉴욕협약의 締約國이 되었으므로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외국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非締約國에서 행해진 경우에 우리 중재법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이다. 立法論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국내중재법과 별도로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에 관한 한 국내중재에 관한 國內法을 거론하기보다는 국제민사소송법에 기초한 條理法으로서 우리도 加入國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뉴욕협약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sup>7)</sup>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중재사건을 그 사건의 당사자를 內國인과 外國人으로 구분하여 중재판정승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내국인에게는 유리한 반면 외국인에게는 불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제중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중재가 국제적으로 公正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재판정승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仲裁機構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보에 입각해서 仲裁制度의 發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8)</sup>

6) 金大鉉, 前揭論文, p.854-855.

7) 張文哲, “外國判決과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仲裁學會誌, 第3卷, 韓國仲裁學會, 1993. 12, p.12-13.

8) 趙貞坤, “韓國에서의 商事仲裁와 勝率”, 貿易學會誌, 第22卷 第2號, 韓國貿易學會, 1997. 6, p.313.

## 2. 뉴욕協約

뉴욕協約은 UN에 의하여 국제적인 商去來를 활성화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958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締約國에서는 外國仲裁判定的 承認 및 執行을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73년 5월 9일 이 협약의 제42번째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118개국(1998년 8월 3일 현재)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두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약국은 세계의 주요 무역국들을 망라하고 있다.<sup>9)</sup>

뉴욕협약은 “이 협약은 仲裁判定的 承認 및 執行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自然人 또는 法人間의 約束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뉴욕협약에서 말하는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에서 내국중재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도 포함하므로 적용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개념이다.<sup>11)</sup>

또한 뉴욕협약은 주 협약이 체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은 그 조약의 체약 당사자에 대해서만 拘束力이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拘束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뉴욕협약에 규정이 없으나 당연히 동 협약은 동 협약의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가 뉴욕협약의 체약당사국이고, 그 요구를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도 동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경우 동 협약은 양 당사국에게 적용된다.<sup>12)</sup>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따라 체약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有效한 仲裁合意가 있어야 한다. ② 중재판정은 適法한 節次進行으로 내려져야 한다. ③ 중재판정이 판정지 국가에서 既判力(確定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의 내용이 執行地 국가의 公序良俗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sup>13)</sup>

9) 대한상사중재원 편, 前揭書, p.41.

10) 뉴욕協約 제1조 제1항.

11) 張文哲, 前揭論文, p.14.

12) 金明基, “外國仲裁判定的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의 一般的 考察”, 仲裁, 제28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6 겨울, p.39.

13) 대한상사중재원 편, 前揭書, p.41.

뉴욕협약 제3조 1항에 따르면, 外國仲裁判定이 承認 및 執行要件을 갖추면 일단 拘束力을 갖는다. 동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서로 다르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立法例와, 내국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立法例 등이 있다.<sup>14)</sup>

뉴욕협약은 國際商事仲裁의 世界化를 증진시킨 공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 ① 각국의 實定法體系가 서로 상이함에도 쉽게 인용 내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규정된 점, ② 一方 當事者가 법원에 제소한 분쟁을 他方 當事者가 사전중재합의가 있음을 주장하면 뉴욕협약 체결국의 법원은 반드시 중재에 의뢰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뉴욕협약 체결국 고유의 사법관할권영역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중재합의조항의 有效性에 대한 자국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유무판결 내지 효력정지판결 등에 대하여 체결국의 主權機能을 침해하지 않는 점,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쌍무 또는 다자간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의 효력에 優先權을 부여하고 不干涉原則을 인정한 점 등이다.<sup>15)</sup>

그렇지만 21세기에 진입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뉴욕협약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① 뉴욕협약 체결국인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그 국가의 법정에서 無效가 되었을 때에 그 중재판정을 체결국인 분쟁당사자 소속국가의 법원에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強制執行할 수 있을 것인가? ② 특정 몇몇 국가의 법원이 최근에 내린 판결은 뉴욕협약 체결국 간의 권리와 의무의 互惠主義精神을 위태롭게 하고 뉴욕협약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相互主義精神에 입각한 이 협약이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가? ③ 가까운 장래에 뉴욕협약이 汎世界的으로 통용되는 법의 지배의 틀로 위상을 높일 만한 합리적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④ 國際商事仲裁가 뉴욕협약을 통하여 진정으로 국제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sup>16)</sup>

14) 張文哲, 前掲論文, p.15-16.

15) 이순우, “뉴욕협약 40주년기념식 참관기”, 仲裁, 제289호, 대한상사중재원, 1998 가을, p.7.

16) 上掲論文, p.8.

### Ⅲ. 貨換信用狀 紛爭解決 規則

신용장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法院에서의 訴訟에 의한 해결방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는 신용장 분쟁 해결에 적용가능한 규칙과 표현은 법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및 상업상의 기관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신용장은 다른 通商의 分野와 비교하여 볼 때 獨特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7)</sup> 아마도 去來觀點에서의 信用狀 慣行과 法律的인 觀點에서의 信用狀 紛爭解決 사이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신용장에 관하여 채택되어 온 관습 및 관행의 일부는 때때로 많은 변호사들 및 법원의 直觀에 어긋나기 때문에<sup>18)</sup> 법원에 의한 신용장 분쟁의 해결방식은 誤謬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되어 왔다.<sup>19)</sup>

따라서 信用狀 紛爭은 신용장의 개설은행 및 신용장의 이용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專門家的 意見을 끌어들이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仲裁委員會가 신용장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중재가 그러한 전문가적 의견을 끌어들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전문가에 기초한 仲裁가 訴訟보다는 신용장 분쟁 해결의 더 나은 수단일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신용장에 관한 분쟁은 故意로 略式 處分判決에 따른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대한 지급책임은 매우 엄격한 표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受益者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개설은행은 그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하여야만 한다. 개설은행은 基本的인 賣買去來의 이행의 검사가 요구되

17) J. G. Barnes & J. E. Byrne, "Revision of UCC Article 5", *Business Law*, Vol.50, August 1995, p.1450.

18) 예를 들어 많은 法律家들은 매수인에게 不一致하는 물품을 선적한 매도인이 여전히 그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直觀에 어긋난다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만일 매도인이 개설은행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證據書類를 提出하였다면, 물품이 그들의 계약에 따라서 引渡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들간에 해결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지급의무가 있다. 신용장의 運用 때문에 그 紛爭은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에 대한 救濟를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瑕疵있는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이 救濟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19) S. Marjanovic, "Arbitration Firm Set Up for Letter of Credit Disputes", *American Banker*, November 1996, p.28.

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이 논쟁중이 아닌 이유로 신용장 분쟁은 종종 略式 處分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法院 訴訟節次에서 이용될 수 있는 延長 證據開始節次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 당사자들이 民事訴訟에서 일반적인 장기간의 遲延을 초래할 어떠한 正當化도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신용장 분쟁은 비교적 小規模 금액의 금전을 포함하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분쟁은 法院에서의 해결을 위한 經濟的 實行可能性의 범위밖에 놓여지게 된다.<sup>20)</sup>

信用狀 紛爭과 專門家에 기초한 仲裁 사이의 “自然的인 適合性”을 인정하고 나서, 국제적 조직들은 최근 신용장 분쟁 해결을 위한 專門化된 法廷과 節次規則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왔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선 두 기관은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sup>21)</sup>와 國際信用狀仲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 ICLOCA)<sup>22)</sup>이다. 다음은 양 기관에 의한 신용장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 1. 國際商業會議所의 規則

### (1) 規則의 制定背景 및 經過

수년의 기간 동안 ICC 銀行委員會는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문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여 왔다. 1996년 여름 경에 貨換信用狀 紛爭 解決制度의 可能性에 관한 作業部(Working Party on the Feasibility of Documentary Credit Resolving Conflict System)를 통하여 ICC는 ICC 貨換信用狀紛爭 專門家的 意見 規則(Documentary Credit Dispute Expertise Rules :

20) L. W. Newman & M. Burrows, “Alternatives for Resolving Letter of Credit Dispute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3, No.5, May 1997, p.22.

21) 國際商業會議所(ICC)는 1919년에 설립되었다. 동 회의소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 회원들은 전세계에 걸쳐 7,000 개 이상의 회사 및 비즈니스 조직으로 성립된다. ICC는 58개국에 “國內委員會”를 가지고 있다. ICC의 전반적인 목표 및 목적은 국제 비즈니스계에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國際通商을 장려하는 것이다.

22) 國際信用狀仲裁센터는 9월에 창립되었고 Washington, D.C. 근처의 Gaithersburg, Md 에 위치한다. ICLOCA는 신용장 세계 내부에서 主導權의 결과로서 창설되었고 國際銀行業에 관한 미국 평의회(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anking: USCIB) 및 국제은행법 법률 및 관행 법인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가 공동 스폰서를 맡아왔다.



DOCDEX Rules)으로서 알려져 있는 초안 규칙을公表하였다.<sup>23)</sup> 초안 ICC DOCDEX Rules은 코멘트를 위하여 ICC의 각 국내위원회에 배포되었다. 국제 銀行界 및 仲裁界에 의한 광범위한 코멘트와 개정후, ICC DOCDEX 규칙은 1996년 11월 14일에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ICC가 신용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DOCDEX라고 불리는 특별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ICC 회의에서 신용장 분쟁이 법원을 벗어나서 해결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그 대답은 ICC 國際 仲裁裁判所에 의하여 제안된 가능성 뿐만 아니라 ICC 專門家的 意見에 대한 규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실무자들은 신용장이 아직 유효한 동안 衝突 또는 紛爭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迅速하고, 은행의 信賴를 얻기에 충분히 專門化될 어떤 시스템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DOCDEX가 탄생된 취지이다.<sup>24)</sup> 당사자들은 만일 그들이 拘束力이 있는 私的 紛爭解決의 어떠한 방식에 합의한다면 광범한 訴訟의 費用 및 遲延을 줄일 수도 있다. ICC 특별작업부에 의한 거의 2년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하여 개발된 貨換信用狀 紛爭 專門家的 意見 規則("DOCDEX")은 ICC 은행위원회와 협력하여 ICC 전문가적 의견센터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sup>25)</sup>

다시 말하면 DOCDEX 규칙은 은행간 償還問題를 포함하여 貨換信用狀 慣行에 대한 迅速하고, 費用側面에서 效果的이고, 專門家에 기초한 紛爭解決 메카니즘에 대한 국제 은행업 사회로부터의 분명한 요구에 대한 國際商業會議所(ICC)의 반응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제안은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에게 제안되었고, 동 규칙의 개발은 독일인인 Winfried Holzwarth의 의장직하의 特別 作業部에 게 위임되었다. 동 규칙의 초안 작성은 국제 전문가적 의견센터의 의장인 Hervu Charrin(프랑스) 뿐만 아니라 銀行技術 및 實務委員會의 前任議長인 Charles Del Busto(미국), 名譽議長인 Bernard Wheble(영국), 前任 技術顧問인 Ferdinand Müller(독일)의 助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작업부는 20개국에 있는 ICC 회원들로부터 유용한 초안 작성상의 코멘트를 받았다.<sup>26)</sup>

23)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2.

24) W. Holzwarth, "ICC's new DOCDEX Rules for settling L/C disput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1, Winter 1997, p.8.

25) W. Park, "Clarendon v. State Bank of Saurashtra : the perils of going to court over an L/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1, Winter 1997, p.12.

26) <http://www.iccwbo.org>

DOCDEX 규칙은 專門家的 意見과 名聲을 가진 ICC의 가장 커다란 양대 분야 즉, 貨換信用狀 分野<sup>27)</sup>와 國際的 紛爭解決 分野<sup>28)</sup>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DOCDEX 규칙은 전세계적인 銀行業 및 輸出貿易社會에 대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DOCDEX 규칙에 따라서 행해진 전문가 결정의 概要<sup>29)</sup>는 머지않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sup>30)</sup>

## (2) 規則의 內容 및 紛爭解決節次

ICC 전문가적 의견에 대한 규칙하에서 “專門家的 意見”의 목적은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제안된 獨立的 專門家가 紛爭의 公正하고 迅速한 解決을 위하여 적당한 事實認定 및/또는 勸告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仲裁人이 아니라 專門家로서 행동한다. 전문가적 의견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신청에서 맡겨진다. ICC에 의하여 권고되는 標準條項은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의 當事者들은 만일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ICC의 專門家的 意見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ICC의 국제 전문가적 의견 센터에 의지하기로 합의한다.”<sup>31)</sup> 만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전문가의 事實認定 또는 勸告는 當事者들에게 拘束力이 없다. 이것은 비록 당사자들의 분쟁에 말려들어 있을지라도, 당사자들이 專門家的 意見을 의지함으로써 계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의 결정이 拘束力이 있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sup>32)</sup>

다음으로 開始者라고 불리는 信用狀 紛爭의 당사자가 DOCDEX 결정을 추구하고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開始者는 그들이 주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원인을 가진다고 결정하는 그 紛爭의 1인 또는 2인 이상

27) 동 분야는 ICC의 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에 의하여 전세계적인 기초로 지배되는 분야임.

28) ICC의 權威는 ICC 國際仲裁裁判所 및 DOCDEX 시스템을 監督할 ICC의 국제 전문가적 의견센터로부터 유래한다.

29) 匿名을 維持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이름이 제거된 상태로 공개된다.

30) <http://www.iccwbo.org>

31)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gree to have recourse, if need arise,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Expertis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accordance with the ICC’s Rules for Expertise.”

32) J. F. Bourque, “A new system of ICC expertise is being used to resolve L/C disput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2, No.2, Spring 1996, p.13.

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開始者는 ICC 국제 전문가적 의견 센터에 모든 관련 서류들과 함께 그 要請書를 제출한다. 被告라고 불리는 다른 당사자는 만일 그가 선택한다면 그의 청구의 개요와 그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관련 서류들과 함께 開始者의 要請書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sup>33)</sup> ICC DOCDEX 규칙하에서 要請書 및 答辯書는 “수령되었을 때 최종적이어야 한다.” (제4조 1항). 요청서 및 답변서에 대한 보충은 전문가적 의견센터의 “誘引”을 조건으로만 제출될 수 있다(제4조 2항).

ICC 국제 전문가적 의견 센터 앞에 사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입하여야 할 아무런 형식도 없다. 요청서는 단지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ICC 국제 센터에 의지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사본(만일 그 요청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선택에 관한 모든 관련된 정보(즉, 國籍, 資格 등), 전문가의 판결 요약에 대한 기술적인 개요 및 모든 관련 서류들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요청서는 ICC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US \$1,000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센터의 行政費用으로 대변에 기입되며 되찾을 수 없다. 만일 요청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要請書의 사본은 명시된 기간 이내에 그의(그들의) 코멘트를 받기 위하여 센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발송될 것이다.<sup>34)</sup>

要請書를 받자마자 전문가적 의견센터는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보존된 내부 목록으로부터 3인의 獨立的인 專門家를 임명할 것이다(제6조 1항, 2항). 당사자들은 임명된 전문가들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동 전문가들은 모든 利害關係의 충돌의 존재를 전문가적 의견센터의 주의로 가져올 것이다(제6조 4항). 사실상 紛爭 當事者들은 ICC DOCDEX 결정의 공포 이전에 임명된 전문가들의 이름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제7조 5항).<sup>35)</sup> 전문가적 의견에 대한 비용에 관한 선불이 수령되자마자 그 파일은 전문가에게 전달된다. 보통 信用狀 紛爭에 관한 專門家的 意見은 변호사에 의한 審理 또는 陳述없이 단지 서류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선불은 그 전문가적 의견을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선불의 기초는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의 상담을 행하는 센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선불은 전문가

33) W. Holzwarth, op. cit., p.8.

34) J. F. Bourque, op. cit., p.13.

35)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3.

의 보수 및 경비와 센터의 행정비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가 US \$1,000보다 더 높은 경우 센터의 행정비용은 전문가의 보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sup>36)</sup>

標準報酬의 수령 후 전문가적 의견센터는 그 다음 요청서, 답변서 및 그것에 대한 모든 보충서를 임명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이고, 동 전문가들은 그 후 30일 이내에 서면의 ICC DOCDEX 결정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제7조 4항). ICC DOCDEX 결정은 전문가적 의견센터와 임명된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서면의 제출물에만 기초될 것이다(제1조 5항). ICC DOCDEX 결정은 처음에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적 의견센터에 제출될 것이다.

전문가적 의견센터는 “ICC DOCDEX 결정이 UCP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의 기술고문 또는 임명된 대표자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제8조 1항). 그러나 기술고문에 의하여 提案된 ICC DOCDEX 결정에 대한 모든 변경은 다수의 임명된 전문가들에 의하여 승인되어야만 할 것이다(Id). ICC DOCDEX 결정은 영어로 발행될 것이고 (i) 임명된 전문가들의 이름, (ii) 중요한 사실의 개요, (iii) “간단명료하게 표시된 이유와 함께” 爭點의 결정을 포함하여야만 한다(제8조 3항). 각 ICC DOCDEX 결정의 원본은 10년 동안 ICC에서 정리되어 보존될 것이다(제9조 1항). “ICC는 언제나 분쟁 당사자들의 身元이 保護되는 조건으로 모든 ICC DOCDEX 결정을 공표할 수 있다.”(제9조 2항).<sup>37)</sup>

다음은 동 규칙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동 규칙의 제정 작업부의 의장이었던 Winfried Holzwarth가 밝힌 내용이다. 먼저 요청으로부터 결정까지의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開始者が 그의 요청을 제출하는 시간으로부터 DOCDEX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하여 수령되는 시간까지 평균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그것은 당사자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그들이 그 과정의 속력을 높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공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40~50일 이내에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答辯書와 심지어 보충물조차도 허용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논쟁의 목적을 위하여 말하자면 센터에 의한 요청서의 수령일을 넘어서 100~120일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最大限의 限度로서 심지어 지체된 과정에 있어서도 단지 3~4개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분쟁이 되고 있는 신용장을 포함하는 典型的인 裁判所 事件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과 비교하면, 그것은 국가마다 다르며 계획하고 있는 節次의 種類에 따

36) J. F. Bourque, op. cit., p.13.

37)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3.

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英國에서의 訴訟節次를 고려한다면 그곳에서는 6~8개월 이내에 판결을 획득할 수 있다. 만일 獨逸로 간다면, 제1심판결을 위해서는 아마도 1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프랑스를 조사하면 1년~1년 6개월이 합리적인 개산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단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간은 선택하는 訴訟節次 뿐만 아니라 개개의 사건 및 재판소에 따라 결정된다.<sup>38)</sup>

전문가들에 관하여 DOCDEX 규칙 제1조 3항은 “분쟁이 ICC 전문가적 의견센터에 제출된 때에 센터는 그것에 관한 결정을 행하기 위하여 3인의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누가 될 것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들이 선택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전문가적 의견센터와 협동해서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公式化되어야만 할 것이다. ICC는 이러한 문제를 동 작업부에서 자주 검토하였고 ICC의 첫번째 계획은 단지 은행위원회가 그 회원들에게 그들이 專門家들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 및 또는 은행위원회 밖의 전문가들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은행위원회 또는 센터는 이 분야에서 다른 專門家들을 발견해 내기 위하여 ICC 국내위원회에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 경우 전문가들 모두가 은행가일 가능성은 명확히 상상되지 않는다. 작업부 자체 내에서 흔히 銀行家들만큼 많은 非銀行家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결코 없다.<sup>39)</sup>

동 규칙에서는 전문가들의 이름이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된다. 專門家的 意見 또는 仲裁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비록 절차가 은밀할 수 있을지라도 당사자들은 적어도 누가 그들의 사건에서 연루될 것임을 안다. 왜 DOCDEX 절차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匿名을 선택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ICC는 이미 자리잡은 모든 시스템 즉, ICC 國際 仲裁裁判所 또는 ICC 밖의 다른 시스템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현존하는 시스템과 다른 무엇인가를 고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은행가들은 두 은행들 사이에서 仲裁人으로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은행과 換去來銀行 사이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DOCDEX 결정을 단지 1인 또는 3인의 專門家들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ICC의 見解로 만드는 것이었다.<sup>40)</sup>

38) W. Holzwarth, op. cit., p.8.

39) ibid., at p.9.

40) ibid.

본 규칙 제1조 5항<sup>41)</sup>은 DOCDEX 절차에 있어서 ICC 전문가적 의견 센터와의 開始者 및 被告의 通信은 排他的으로 書面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 이 과정에 연루된 아무런 口頭의 審理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仲裁節次에 있어서는 언제나 구두 심리를 가진다. 한가지 이유는 명백하다. 만일 구두 심리를 제공한다면, 전문가들을 匿名으로 유지할 수 없다. 다른 이유는 ICC의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결정에 이르는 것이었고, 이것이 보다 쉽게 행해질 수 있는 방식은 全過程을 書面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임명된 전문가들에게로 및 전문가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센터, 開始者 및 被告에게로 및 被告로부터의 양 방향에서의 통신에 적용된다.<sup>42)</sup>

DOCDEX 규칙하에서 專門家들의 결정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拘束力이 없다. 당신이 그 절차에 참가하기로 합의하는 開始者와 被告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決定이 내려진다. 한 은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결정은 仲裁判定의 形式的 資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결정은 통상적으로 法的으로 實行可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작업부는 만일 당신이 仲裁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裁判所의 적절한 管轄權을 벗어나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들이 그 후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그러한 결정은 단지 最終的일 수 있다라고 믿었다.<sup>43)</sup>

ICC 은행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질문 및 대답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決定은 法的으로 拘束力이 없지만 우리는 종종 재판소가 그들의 판결에 있어서 그 결정을 참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의장의 판단으로는 裁判所가 DOCDEX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우리는 DOCDEX 결정이 이전에는 ICC 전문가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고 현재는 기술고문에 의하여 검토되고 전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承認된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일한 주의를 재판소에 의하여 받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싶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은행위원회 대답은 단지 ICC가 懸案中의(未決定的) 또는 危險에 직면한 아무런 訴訟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재판소에 대한 DOCDEX의 영향력은 또한 DOCDEX 專門家

41) "In the DOCDEX procedure the communication with the Centre shall be conducted exclusively in writing, i.e. by communication received in a form that provides a complete record thereof, via teletransmission or other expeditious means."

42) W. Holzwarth, op. cit., p.9.

43) ibid

들 + 銀行委員會의 기술고문이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裁判所가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專門家的 意見을 가지는 문제들로 그들 스스로를 제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DOCDEX 결정에서 더 분명하면 할수록 그것이 國際的 信用狀 慣行에 관한 지침으로서 재판소에 대하여 더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sup>44)</sup>

은행위원회가 대답한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이러한 公報 또는 책에서 公表된다. DOCDEX 결정이 공표되기 위한 어떠한 조항이 있는가? DOCDEX 제9조 2항에서 ICC는 모든 DOCDEX 결정을 公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즉, 紛爭當事者들의 身元은 暴露되지 않아야만 하며 전문가들의 신원은 이전에 언급된 이유 때문에 폭로될 수 없다.<sup>45)</sup>

DOCDEX 과정에 착수하기 위하여 개시자는 ICC에 얼마의 돈을 預置하여야 하며 그것이 고정되고 불변이며 최종적인 비용인가? 標準報酬는 현재 미화 5,000 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상당한 논의 후에 그 금액에 도달하였다. 더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다른 신용장 금액에 대하여 다른 가격 요금표를 가지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또한 그 절차가 專門家에게 要請書 및 모든 答辯을 보냄으로써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開始者가 즉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할 것인 最低의 金額을 선택하고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동일한 보수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서류를 포함하는 어떠한 매우 어렵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및/또는 任命된 專門家들이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다른 實務家들에게 조언을 구하여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만일 그것이 그렇다면 그리고 만일 문제가 되는 신용장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단지 그 때에 비용이 다시 미화 5천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이 금액이 DOCDEX 절차에 있어서 모든 비용에 대한 最高限度이다. 그 비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분담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무엇이든 비용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물론 모든 단계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어떤 당사자가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ICC의 관점에서 보아 유일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費用을 지급하건간에 미화 5천달러의 標準報酬가 도달하였다

44) *ibid.* at p.10.

45) *ibid.*

46) 그러나 이것은 通常的인 增額 또는 필요한 增額은 아니다.

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있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보수에도 적용된다.<sup>47)</sup>

### (3) 最近의 事例研究

최근에 두 개의 要請書가 이 시스템하에서 센터에 제출되었다. 첫 사건에서는 요청서가 수령된 일자로부터 2달 이내에 決定이 내려졌다. 요청하는 당사자인 아시아의 은행과 답변하는 당사자인 유럽은행 간에 係爭中인 問題는 UCP 400하에서 개설된 미화 86,000 달러인 신용장에서의 주장된 不一致와 관계가 있었다. ICC 은행위원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제안된 덴마크인 전문가가 ICC 專門家的 意見 센터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전문가적 의견의 총 비용은 미화 2,725 달러이었다. 비록 당사자들은 專門家的 보고가 拘束力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ICC 專門家的 意見에 의지하기로 합의하였을지라도, 그 과정은 紛爭의 最終的인 解決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요청하는 당사자는 “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國際 專門家的 意見센터에 의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표현하였다.

약 50만 미 달러를 포함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두 번째 사건은 아직도 決定前이다. 그 사건은 최초 요청일로부터 3달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요청은 그 紛爭이 발생한 후 關聯 當事者들의 공동의 합의를 통하여 행해졌다. 분명하게 ICC가 그 과정에 관한 은행들로부터의 매일의 문의를 받는 것에 의하여 증명되듯이 전문가적 의견을 통하여 信用狀 紛爭을 解決하는 것은 그 이점이 명백하다.<sup>48)</sup>

## 2. 國際信用狀仲裁센터의 規則

### (1) 規則의 制定

9월에 ICLOCA는 “信用狀 紛爭에 관한 仲裁規則”을 채택하였다. ICLOCA 규칙은 1976년에 채택된 유엔 國際貿易法委員會(UNCITRAL) 仲裁規則에 입각하고 있다. 적용가능하기 위하여 ICLOCA 규칙은 신용장 속에 당사자들의 契約<sup>49)</sup>이

47) W. Holzwarth, *op. cit.*, p.10.

48) J. F. Bourque, *op. cit.*, p.13.

49) 즉, 信用狀 또는 類似한 確約(개설은행 및/또는 확인은행과 수익자간의)과 信用狀 開



삽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ICLOCA 규칙은 또한 貨換推尋 및 資金移動과 같은 국제적 은행업 운영과 관련된 다른 분쟁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의도된다.<sup>50)</sup>

## (2) 規則의 內容 및 紛爭解決節次

ICLOCA 규칙은 제33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칙의 주요 내용과 紛爭解決節次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ICLOCA 규칙 제1조는 기본적인 신용장이 ICLOCA 규칙에 따른 또는 국제 신용장중재센터 앞에서의 분쟁 해결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동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1항). 중재는 “原告”가 그 센터와 “被告”에게 仲裁通知를 제출한 때에 착수된다(제3조 1항). 청구금액에 따라서 \$1,000~\$3,000까지의 등록 수수료가 중재 통지에 수반하여야만 한다(제3조 4항).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1인 또는 3인)에 관하여 合意를 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중재개시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單一 仲裁人에 의하여 審理될 것이다(제5조). 만일 단일 중재인이 임명될 예정이라면, 그 仲裁人은 당사자들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또는 만일 아무런 합의도 30일 내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센터에 의하여 임명된다(제6조). 만일 3인의 仲裁人이 임명될 예정이라면,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다. 센터는 實務 또는 仲裁에 있어서 충분한 專門家的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일부 중재인이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임명된 당사자를 중재인으로서 승인할 權限을 保有한다(제8조). ICLOCA 규칙은 또한 仲裁人을 忌避하고 交替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제9조~제14조). 기피에 관한 결정은 센터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다.<sup>51)</sup>

분쟁에 관한 자료의 서면의 제출만을 규정하는 ICC DOCDEX 규칙과는 달리 ICLOCA 규칙은 중재인에게 그 중재가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에 관한 廣範圍한 裁量權을 준다. 제15조 1항은 “본 규칙에 따라서 仲裁裁判所는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되고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완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조건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仲裁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며 만

設依賴/償還契約(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을 의미한다.

50)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3.

51) ibid. at p.24.

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다면, “仲裁의 環境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고서” 센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제16조 1항). 原告는 제18조에 따라서 “請求陳述書”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피고는 제19조에 따라서 “抗辯陳述書”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被告는 또한 反訴를 提起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被告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야만 한다. 제21조는 “仲裁裁判所는 중재조항 또는 독립된 중재계약의 존재 또는 有效性에 관한 모든 이의를 포함하여 동 재판소가 아무런 管轄權을 가지지 않는 이의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管轄權에 관한 모든 異意는 抗辯의 陳述書 또는 反訴에 관하여 그 反訴에 대한 反對訴答보다 늦지 않게 제기되어야 한다(제21조 3항).<sup>52)</sup>

제24조는 證據의 爭點에 대하여 진술하며 “각 당사자는 그 請求 또는 抗辯을 지지하기 위하여 의지된 사실에 대한 立證責任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1항). 제25조는 口頭審理에 관한 기본적 룰을 설명한다. 제26조는 중재인에게 暫定的 禁止命令의 방식으로 暫定的 救濟를 발급할 권한을 제공한다(제26조 1항). 비교하면 ICC DOCDEX 규칙은 잠정적 구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제27조는 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특별한 문제들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 재판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들을” 임명할 권한을 제공한다(제27조). 비록 동 조항은 누가 전문가의 시간과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慣行은 判斷에서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分擔하는 것일 것이다.<sup>53)</sup>

제32조는 判斷에 대하여 記述한다. 즉, 判斷은 書面으로 행해져야만 한다(제32조 2항). 判斷은 그것이 기초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만일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의하지 않는다면)(제32조 5항). 판단은 모든 仲裁人에 의하여 署名되어야만 한다(제32조 5항). 판단은 만일 판단이 행해진 국가의 법률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登錄 또는 登記되어야만 한다(제32조 7항). 뿐만 아니라 비록 중재재판소가 判斷의 形式에 관하여 센터와 “협의할 수 있을” 지라도 판단은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제32조 4항).<sup>54)</sup> 제32조 8항하에서 “센터는 단지 당사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또는 衛生的으로 된 形式, 즉, 當事者들의 身元

52) *ibid.*

53) *ibid.*

54)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4.

을 숨기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削除 또는 變更을 조건으로 및 당사자들에게 그 衛生的으로 된 變形에 관하여 코멘트하기 위한 30일을 준 후에야 그 判斷을 公表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들이 그 衛生的으로 된 變形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33조 4항은 그 중재에 적용될 법률을 지배한다. “仲裁裁判所는 그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지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한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재판소는 동 재판소가 적용가능하다고 고려하는 國際私法 規則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sup>55)</sup>

### 3. 兩 規則의 比較

ICLOCA 규칙과 ICC DOCDEX 규칙은 둘 다 물론 새로운 것이다. ICLOCA 규칙은 1996년 8월 18일에 최종이 되었지만 ICC DOCDEX 규칙은 언급된 바와 같이 1997년 4월에 ICC 評議會에 의하여 最終적으로 承認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이러한 두 개의 다른 규칙이 아직 시행되어 시험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동 규칙은 그들 규칙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좋건 나쁘건 DOCDEX 규칙은 진실한 仲裁라기보다는 오히려 “專門家的 意見”의 節次를 채택한다. 초안 규칙은 전문가들의 결정은 만일 당사자들이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拘束力이 없을 것이며 그 결정은 “仲裁判定의 어떠한 法的 要件에 따르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專門家の 決定은 100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判定의 承認을 委任하고 있는 뉴욕 仲裁協約의 強行計劃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貨換信用狀 紛爭의 당사자들은 DOCDEX 절차없이 지내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 대신 그들의 쟁송을 ICC 國際 仲裁裁判所의 규칙에 따른 중재에 부탁할 수도 있다.<sup>56)</sup>

다른 중요한 差異點은 紛爭解決에 관한 두 시스템의 節次에 있다. 그 절차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적 의견센터에 의하여 선택되는 仲裁人의 합의체로서의 서면의 제출로 제한된다. 당사자들의 融通性을 제한하지만, ICC DOCDEX 규칙은 서류만의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정을 행할 專門家들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55) *ibid.* at p.25.

56) W. Park, *op. cit.*, p.12.

신속한 결정을 장려하고자 계획된다. 반면에 ICLOCA 규칙하에서 仲裁는 더 융통성이 있다.<sup>57)</sup>

ICLOCA 규칙하에서 임명된 중재인들은 개별 분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절차를 맞출 수 있다. ICLOCA 규칙하에서 당사자들은 누가 仲裁人으로서 봉사하는가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ICLOCA 규칙은 특별히 暫定的 救濟를 규정하고 있지만 ICC DOCDEX 규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ICC DOCDEX 절차는 UCP에 의하여 지배되는 신용장에만 예정되며, 그것은 排他的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반면에 ICLOCA 중재에서 仲裁人들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률을 선택하였건간에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CLOCA 규칙은 UNCITRAL 규칙에 밀접하게 입각하고 있다. 對照的으로 ICC DOCDEX 규칙은 UNCITRAL 규칙과 거의 類似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ICLOCA 중재당사자들은 UNCITRAL 규칙에 관하여 존재하는 해석상의 註釋 및 判決法(주로 이란-미국 請求裁判所의)의 실질적 본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ICC DOCDEX 절차의 당사자들은 신 절차를 처리할 것이며 동 절차는 傳統的인 仲裁보다 덜 複雜하고, 더 簡素化된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sup>58)</sup>

마지막으로 ICLOCA 규칙보다 DOCDEX 규칙이 유리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仲裁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다른 절차들이 있다. ICC 국제 전문가적 의견 센터는 1인의 개별적인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이 전문가는 그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대할 것이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지난 해 동안 내내 몇 개의 신용장 사건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決定은 단지 1인의 전문가에 의하여 주어지지만 반면 DOCDEX 결정은 3인의 專門家들에 의하여 내려지고 그 결정은 은행위원회의 기술고문에 의하여 조사된다. 이것은 각 DOCDEX 결정에 많은 重要性和 安全을 준다.<sup>59)</sup>

57) L. W. Newman and M. Burrows, op. cit., p.25.

58) ibid.

59) W. Holzwarth, op. cit., p.10.

## IV. 結 論

本稿는 信用狀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國際商業會議所 (ICC)와 國際信用狀仲裁센터(ICLOCA)에 의한 규칙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ICC는 信用狀統一規則(UCP)이라는 막강한 원군을 등에 업고 전문가에 의한 紛爭解決 規則을 제안하였으며, ICLOCA는 美國의 主導下에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 規則을 제안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신용장에 관한 분쟁은 傳統的인 訴訟에 의존하는 것 대신 전문가에 기초한 仲裁에 의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 신용장의 특수한 성질을 인정하여 ICC와 ICLOCA는 信用狀 紛爭解決에 專門化된 裁判所를 創設하여 왔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겨우 시작되었을지라도 신용장 분쟁의 專門家에 기초한 仲裁는 신용장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요하고도 아마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 규칙은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 ICC 규칙은 전문가적 의견 절차를 택하고, ICLOCA 규칙은 仲裁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뉴욕 仲裁協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後者의 규칙이 더 有利한 側面이 있다. 또한 ICC 규칙은 UCP에 의하여 지배되는 신용장에만 예정되지만, ICLOCA 규칙은 어떠한 법률에도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다.

반면 ICLOCA 규칙은 ICC 규칙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迅速性 및 經濟性 側面에서는 ICC 규칙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紛爭 當事者들은 위의 長短點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쟁 당시의 상황에 맞는 紛爭解決節次를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ules for resolving documentary credits disputes. Firs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shed Documentary Credit Dispute Expertise Rules on October 1, 1997. The DOCDEX Rules ar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response to a clear call from the international banking community for a rapid, cost effective, expert-bas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documentary credit practice, including bank-to-bank reimbursement issues.

Nex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96. The Center was founded as a result of an initiative from within the letter of credit community and has been co-sponsored by the 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anking(USCIB)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 In September, ICLOCA adopted its "Rules of Arbitration for Letter of Credit Disputes."

Therefore, parties to letter of credit disputes should choose a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the circumstances in the future.

參 考 文 獻

- 金大鉉, “우리 나라 仲裁法, UNCITRAL 標準仲裁法 및 主要先進國 仲裁法の 比較”, 貿易商務研究, 第7卷, 韓國貿易商務研究會, 1994.
- 金明基, “外國仲裁判定の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의 一般的 考察”, 仲裁, 제28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6 겨울.
- 李淳雨, “뉴욕협약 40주년기념식 참관기”, 仲裁, 제289호, 대한상사중재원, 1998 가을.
- \_\_\_\_\_, 上사중재절차 해설, 法經社, 1994.
- 張文哲, “外國判決과 外國仲裁判定の 承認 및 執行”, 仲裁學會誌, 第3卷, 韓國仲裁學會, 1993. 12.
- 趙貞坤, “韓國에서의 商事仲裁과 勝率”, 貿易學會誌, 第22卷 第2號, 韓國貿易學會, 1997. 6.
- 대한상사중재원 편, 上사분쟁해결안내, 대한상사중재원, 1998,
- Barnes, J. G. & Byrne, J. E., “Revision of UCC Article 5”, *Business Law*, Vol.50, August 1995.
- Bourque, J. F., “A new system of ICC expertise is being used to resolve L/C disput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2, No.2, Spring 1996.
- Holzwarth, W., “ICC’s new DOCDEX Rules for settling L/C disput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1, Winter 1997.
- Marjanovic, S., “Arbitration Firm Set Up for Letter of Credit Disputes”, *American Banker*, November 1996.
- Newman, L.W. & Burrows, M., “Alternatives for Resolving Letter of Credit Dispute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3, No.5, May 1997.
- Park, W., “Clarendon v. State Bank of Saurashtra : the perils of going to court over an L/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1, Winter 1997.